

접 수	의안과 - (20 :)
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

수 신 : 의 장

제 목 : 사회 복지사의 처우 개선과 신분 보장에 관한
법률 수정 및 개정

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
과 같이 제출합니다.

- 붙 임 1. 청원소개의견서 3부
2. 청 원 서 3부. 끝.

2011년 8월 4일

청 원 인

성 명 : 권영범

주 소 경북 구미시 인의동 청구아파트 106동 601호

전화번호 : 054-474-6212 (휴대전화010-2699-7876)

소 개 의 원 : _____ (인) 외 _____ 인

						의 장
담당자	청원담당	과 장	국 장	차 장	총 장	

청원소개의견서

청원인	주소 : 경북 구미시 인의동 청구아파트					
	성명 : 권영범					
건명	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과 신분 보장에 관한 법률 수정 및 개정					
소개년월일	2011년 월 일					
<p><소개 의견></p> <p>청원인 권영범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청소년의원입니다. 대한민국청소년의회는 2011년 8월 4일 대한민국청소년의회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 중 의결된 안건 하나가 <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과 신분 보장에 관한 법률> 이었습니다.</p> <p>대한민국청소년의회에서 의결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<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> 제 3항입니다. 3항에서는 사회복지사의 보수 수준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수준과 동일하게 한다고 하며 일반 공무원들과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. 위 회의는 이러한 차별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아니라 일반 공무원과 같다고 법률안 수정할 것을 요구합니다. 또한 그 세부 항목으로는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과 신분 보장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. 이로써 직업에 귀천을 두지 않고 우리 나라 복지를 발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.</p>						
<p>신구문대조표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50%;">현행문</th> <th style="width: 50%;">개정문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 <p>제 3조(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)</p> <p>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③,④ 생략</p> </td> <td> <p>제 3조(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)</p> <p>① 현행문과 동일</p> <p>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보통 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ㄱ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의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한다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ㄴ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가 근무 중 상해를 입었을 경우 치료비의 40% 가량을 지원한다.</p> <p>③,④ 생략</p>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	현행문	개정문	<p>제 3조(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)</p> <p>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③,④ 생략</p>	<p>제 3조(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)</p> <p>① 현행문과 동일</p> <p>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보통 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ㄱ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의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한다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ㄴ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가 근무 중 상해를 입었을 경우 치료비의 40% 가량을 지원한다.</p> <p>③,④ 생략</p>
현행문	개정문					
<p>제 3조(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)</p> <p>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③,④ 생략</p>	<p>제 3조(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)</p> <p>① 현행문과 동일</p> <p>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보통 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ㄱ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의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한다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ㄴ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가 근무 중 상해를 입었을 경우 치료비의 40% 가량을 지원한다.</p> <p>③,④ 생략</p>					

소개 의원: 권 영 범

청원서

1. 제안이유

DongA.com가 2007-04-20 에 제시한 사회복지사의 부당한 처우에 관한 기사이다.

사회복지사 박인선(32) 씨는 얼마전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경험을 했다. 박 씨는 장애인 복지관에서 장애인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친다. 그는 남성 정신지체장애인들에게 인기가 좋다. 능력도 탁월하지만 자상하기 때문. 남성 장애인들 중에는 수업 시간이면 어김없이 박 씨에게 애정 공세를 퍼붓는 사람들이 있다. 특히 B씨는 도가 심했다. 그는 박 씨에게 몰래 다가가 킁킁거리며 향기를 맡거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곤 했다. 심할 경우에는 스타킹을 벗기려고 달려들 때도 있었다. 그럴 때마다 박 씨는 B씨를 어르고 달래며 잘 받아넘겼다. 그러던 어느 날 박 씨가 계단을 내려가려던 순간이었다. 갑자기 B씨가 나타나 박 씨를 밀었다. 박 씨는 계단 아래로 데굴데굴 굴렀다. 늑골에 금이 가고 발목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. 박 씨는 “가끔 뜻하지 않게 부상을 입는다. 하지만 달리 하소연할 데가 없다. 정신지체장애인들은 좋아서 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이다”며 한숨을 쉬었다. 또 다른 경우 사회복지사 이한경(34) 씨는 구타를 당해 이빨이 부러졌다. 정신지체장애인인 C씨가 갑자기 입에 게거품을 물고 쓰러졌다. 이 씨는 C씨에게 다가가 응급처치를 하려고 했다. 그 순간 C씨가 이 씨에게 사정 없이 주먹을 휘둘렀던 것.

2. 주요골자

-제 3조(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)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

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보통 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ㄱ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의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한다.

ㄴ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가 근무 중 상해를 입었을 경우 치료비의 40% 가량을 지원한다.

-신구문대조표

현행문	개정문
제 3조(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③,④ 생략	제 3조(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) ① 현행문과 동일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보통 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ㄱ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의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한다. ㄴ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가 근무 중 상해를 입었을 경우 치료비의 40% 가량을 지원한다. ③,④ 생략

청원인 성명 : 권 영범

청원인 주소 : 경북 구미시 인의동 청구아파트 106동 601호

청원인 전화번호 : 010-2699-7876

【별첨 1】

청원인 서명날인부

연 번	성 명	주 소	날 인	비 고

【별첨 2】

소개의원 서명날인부

연 번	성 명	주 소	날 인	비 고

소개의원 서명날인부

청원제출서류 기재요령

1. 청원제출서류는 청원제출용지, 청원소개의견서, 청원서 각각 3부씩(이중 2부는 사본)이며,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.

2. 청원제출용지

- ① 「제목」은 청원요지가 분명하도록 하되 간략하게 정해 주십시오.
- ② 「청원인 주소, 전화번호, 성명」란에는 대표자의 것만을 기재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「성명」란에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기재하여 주십시오. 「날인」란에는 대표자의 실인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외 청원인은 인원수만 기재하여 주십시오.

[예] 성명 : ○○주식회사
.....
대표이사 홍길동 (인) 외 24인(법인)

- ③ 소개의원은 1인 이상의 현역 국회의원이면 가능하며 별첨의 청원소개의견서를 첨부시켜야 합니다.
- ④ 의원인장은 사무처 총무과에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.

3. 청원소개의견서

- ① 청원소개의견서는 당해 청원을 소개하는 국회의원이 작성합니다.
- ② 「소개의견」란에는 청원취지와 소개이유 및 의견을 기재합니다.
- ③ 의원인장은 청원제출용지에 날인된 인장과 동일해야 합니다.

4. 청원서

- ① 청원서는 청원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서식은 없으나 청원서의 표지나 말미에 청원인의 주소, 전화, 성명을 표시하고 날인하여야 하며, 구성에 있어 청원제목, 취지, 내용을 구분하여 기재하여 주십시오.
- ②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는 대표자를 제외하고는 별첨의 청원인 서명날인부와 소개의원 서명날인부에 기재 및 날인하여 주십시오.
- ③ 청원서 용지규격은 가급적 정부공문서 용지의 기본규격인 에이4(A4)규격(가

로210mm, 세로297mm)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.